

문경관광진흥공단 규정 중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2023. 12. 15.

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

신·구조문대비표

<p>제4조(직종의 구분) ① 제3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행정보조원 : 매표 및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</p> <p>2. 일반노무원 : 시설물의 관리, 청소 및 안내 등 일반적인 노무에 종사하는 직원, 현업 부서의 현장적인 기능 직원</p> <p>3. ~ 4. (생략)</p> <p>제5조의2(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)</p> <p>① ~ ②, ④ (생략)</p> <p>③ 공단은 전환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 대상자를 선정한다.</p>	<p>제4조(직종의 구분) ① 제3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삭제></p> <p>2. 일반노무원 : 매표·검표 및 사무보조, 시설물의 유지·보수·관리, 청소·안내 등 주로 현업부서나 현장근무 등의 일반적인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 인력</p> <p>3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의2(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)</p> <p>① ~ ②,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공단은 인사규정 제15조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전환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최종 전환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.</p>
---	--